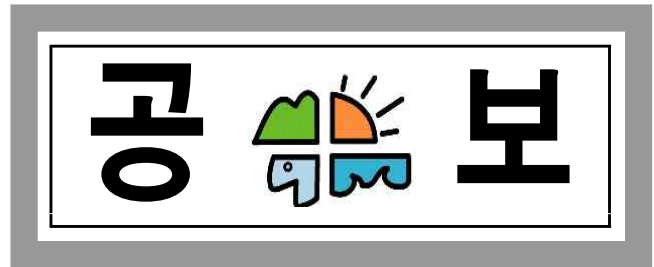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22호 2012년 9월 18일(화)

규 칙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고 시

- 속초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1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9월 18일

속초시규칙 제1292호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 “사업시행자”라 함은”을 “ “사업시행자”란”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 중 “ “협약서”라 함은”을 “ “협약서”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감면카드”를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이하 “감면카드”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4인이내”을 “4명 이하”로 하고, 같은조 제3항 본문 중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를 “각 호와 같다”하고, 같은항 제2호 중 “제4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 중 “송부 받으면”을 “수령하면”으로 하며, 같은항 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교부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 또는 택배수령으로 하되 택배수령 시 택배비용과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재발급”을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으로, “재발급”을 “발급”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2호는 삭제하고, 같은조 제1항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으로, “제4호서식”을 “제3호서식”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송부 받으면”을 “수령하면”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제5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종전)은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illegible]0mm×297mm[일반용지 60g/ m²(재활용품)]

통행료 감면카드 ☐ 재발급 ☐ 변경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존 감면카드 발급				감면카드 재발급/변경발급			
차량번호	소유주	사용인	카드번호	차량번호	사용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수령 방법

☐ 시청방문 ☐ 택배배송(택배비 신청인 부담, 카드수령시 지불)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 재발급
 ☐ 변경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2.	1. 재발급/변경발급 사유서 1부.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기존 또는 훼손된 감면카드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 5 -

[별지 제3호 서식]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감면카드 신청내용

연번	지역	차종	차량번호	전화번호	소유자	주민번호	사용자1	주민번호1	사용자2	주민번호2	사용자2	주민번호3	사용자3	주민등록지	카드상태	비고

※건별 발급신청서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u>사용되는 용어</u>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u>사업시행자</u>”라 함은 <u>미시령터널</u>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u>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u>를 말한다. 2. “<u>협약서</u>”라 함은 <u>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제8조</u>에 따라 강원도 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u>미시령터널 영북지역 주민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u>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u>사용하는 용어</u>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u>사업시행자</u>란 <u>미시령터널</u>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u>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u>를 말한다. 2. “<u>협약서</u>”란 <u>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제8조</u>에 따라 강원도 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u>미시령터널 영북지역 주민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u>를 말한다.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① ① <u>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행료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u>감면카드</u>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u>4인 이내</u>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u>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u> 1. (생략)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u>제4호서식에</u>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① <u>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조례 제7조에 따라 <u>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이하 “감면카드”라 한다)</u>통행료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u>4명 이하</u>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u>제3호서식에</u>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④ (생략)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 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3.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 또는 택배수령으로 하되 택배수령 시 택배비용과 택배 수령 후 카드분실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 제>
3. 시장은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 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③ 시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면카드 자격 상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	---

속초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속초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속 초 시 장

1. 지역·지구명 : 소하천 구역 및 예정지
2. 대 상 지 구 : 소하천구역 3개소 3.72km, 17,953.1m²
3. 소하천구역 및 예정지 지정(변경)현황

수계명	소하천명	소하천구간		연장 (km)	면적(㎡, 필지수)		지정(변경) 사 유	비고
		시점	종점		기정	변경		
기타	조양천	조양동 629-1	조양동 청초호	1.76	9,529.8(68)	7,680.8(53)	소하천의 적정한 지정·관리 및 주민의 편의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 도모	
청초천	청대1천	조양동 508-21	조양동 192	0.98	8,398.5(43)	5,963.3(25)	“	
쌍천	절골천	도문동 371-17	도문동 371-1	0.98	9,365.4(89)	4,309.0(39)	“	

4. 관계도서(실음생략) : 속초시청 건설과(033-639-2055)비치
5. 지형도면 고시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등재합니다.